

산림청 공고 제2015-102호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6. 17.

산 립 청 장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,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(안 제4조제2항 별표 1)

-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교육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자가 쉽게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
-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교육내용에 목재교육 분야를 추가

나.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(안 제4조제6항)

부령 제 호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
1.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

- 가. 산림과 인간과의 관계, 목재와 인간과의 관계, 산림생태계, 산림자원의 이해, 목재의 이용,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,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등
- 나. 가항의 교육내용 중 1개 이상을 주제로 체험, 해설, 놀이, 토론, 조사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구성

2.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

영역	항목	세부 구성기준
가. 교육프로그램	1) 구성	○ 프로그램의 제목, 목적 및 목표, 기대효과 기술 ○ 프로그램의 개요(장소, 인원, 대상, 시간), 준비물, 진행 과정,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○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※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
	2) 운영	○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○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등 기술 ○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 계획 기술
	3) 평가	○ 프로그램 평가계획(기준, 절차, 방법 등) 기술 ○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 체계 기술
나. 교수요원	자격	○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
다. 교육활동 환경	1) 공간 및 설비	○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(방안) 수립
	2) 안전관리계획	○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(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) 수립
	3) 위생관리	○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수립

라. 활동기록관리	활동기록관리	○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
마. 숙박시설관리 (숙박교육인 경 우)	숙박시설관리	○ 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 확보 ○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

비고: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구성한다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(참조 : 산림교육문화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(1) 전자우편(이메일) : choigr@korea.kr

(2) 우 편 : (우 302-701) 대전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
1803호,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

(3) 팩 스 : 042-481-8887

(4) 전자공청회 : <http://www.epeople.go.kr>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(전화 042-481-1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(www.forest.go.kr) <정보공개-법령정보-입법 및 행정예고>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